##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65

발의연월일: 2020. 8. 11.

발 의 자: 민홍철・김주영・이상직

신정훈 · 황운하 · 박성준

안규백 · 김영배 · 이수진비

류호정 · 용혜인 · 이성만

이원택 • 기동민 • 전혜숙

이형석 • 백혜련 • 남인순

김영호 · 이병훈 · 강민정

윤미향 · 장혜영 · 문정복

홍영표 · 이탄희 의원

(26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군인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공무원의 경우 이미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7항신설).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⑤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⑦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
	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
	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
	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⑦</u> (생 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